

외환거래기본약관 공시사항

1. 기본사항

제정일	개정시행일	판매종료여부(종료일)	기존고객적용여부
2002.10.21	2015.07.10	X	O

2. 개정대비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1	제6조 수수료, 비용 및 손해부담 (1)~(2) (생략)	제 6 조 수수료, 비용 및 손해부담 (1)~(2) (현행과 동일) (3) 은행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통상손해를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은행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신규조항 추가

3. 담당부서명 : 개인금융업무부

외환거래 기본약관

[외화송금, 외국통화매입, 외화수표 등의 매입(추심)거래]

이 외환거래기본약관(이하“약관”이라 함)은 중국공상은행의 대한민국 내에 있는 지점(이하“은행”이라 함)과 신청인과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외환거래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는 한편 당사자간의 이해 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정한 것이다. 은행은 이 약관을 모든 영업점에 비치하고 신청인은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이 약관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제 1 조 적용범위

이 약관은 다음 각호의 거래에 적용된다.

1. 외화송금
2. 외국통화 매입
3. 외화수표 등의 매입 및 추심
4.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거래

제 2 조 실명거래

- (1) 신청인은 실명으로 거래해야 한다.
- (2) 은행은 실명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여권, 사업자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또는 그밖에 필요한 서류 제시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이에 따른다.

제 3 조 외화송금

- (1) 은행은 신청인이 따로 요청하지 않는 한 환거래은행(지급은행, 추심은행 등 관련은행을 말함. 이하 같음)은 은행이 선정하기로 한다.
- (2) 은행은 환거래은행에 지급지시 등을 함에 있어서 통상어, 부호, 암호 등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3) 신청인은 송금거래를 마친 때 지급지시서 사본 또는 송금수표 등으로 송금내용이 정확한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 (4) 신청인의 취소요청이 있는 경우 은행은 송금수표의 원본을 반환 받거나 환거래은행으로부터 송금취소 확인서를 받은 후 환거래은행으로부터 실제 반환 받은 금액에서 은행 및 환거래은행의 비용을 뺀 금액을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시점의 대고객전신환매입률에 의한 원화 금액으로 지급한다.

제 4 조 외국통화 매입

- (1) 은행이 외국통화를 매입한 후 위·변조통화임이 판명된 경우 신청인은 매입신청서 제출한 외국환매입신청서에 근거하여 **외국통화금액과 매입 당시에 외화여신연체이율로 매입일로부터 지급일까지 계산한 손해배상금을 곧 지급한다.**
- (2) 관계기관 등에 의해 몰수되거나, 사고재발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은행은 위·변조 통화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지 않는다.

제 5 조 외화수표 등의 매입 및 추심

- (1) 은행이 매입한 외화수표 등에 관하여 환거래은행으로부터 지급거절 통지를 접수하거나 은행의 관련 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입금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은행이 계산 근거를 명시하여 청구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외화수표 등의 기재금액
해당 외화금액 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에 의한 원화 금액**
 2. 손해배상금
환가료 징수기간 만료일 익일(부도처리가 환가료 징수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도 처리일)부터 **상환일까지 여신연체이율로 계산한 손해배상금**
 3. 기타 부대비용
- (2) 은행이 추심대금을 지급한 후 환거래은행으로부터 **추심대금의 반환청구를 받은 경우에도 제 1 항과 같다.**
- (3) 제 1 항 및 제 2 항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제 1 항 각호의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은행은 외화수표 등의 실물을 신청인에게 반환한다. 그러나 은행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은행의 반환의무는 면제된다.
- (4) 제 1 항 및 제 2 항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매입신청서 제출한 외화수표 등 또는 “외국환 매입(추심)신청서”에 근거하여 제 1 항 각호의 금액을 지급하여 은행은 신청인이 제 1 항 각호의 금액을 지급할 때까지 외화수표 등에 대하여 모든 권리를 행사한다.
- (5) 은행이 외화수표 등의 매입 또는 추심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기업용)을 적용하기로 한다.

제 6 조 수수료, 비용 및 손해부담

- (1) 신청인은 은행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한 것이 아닌 한 제 1 조 각호의 거래에 따른 이자, 수수료, 지연배상금, 우편료, 전신료, 권리보전을 위한 법적절차 비용, 기타 비용 및 손해를 부담하며 **은행이 계산근거를 명시하여 청구하는 바에 따라 곧 지급한다.** 다만, 본인이 계산방법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은행은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한다.

- (2) 은행은 제 1 항의 이자, 수수료, 지연배상금, 우편료, 전신료 등 제반 비용의 요율 및 계산방법을 성질상 고시하기 어려운 것을 제외하고는 고시토록 한다.
- (3) 은행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통상손해를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은행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제 7 조 업무위탁

은행은 대한민국의 **관계법령 및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거래정보의 처리 및 저장업무를 해외로 위탁함에 따라 위탁업무를 처리하는 본·지점, 자회사 및 계열사(이하“관계회사”)에, 그리고 해외의 감독당국에 **고객의 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은행은 그러한 정보제공에 대하여 **사전에 고객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8 조 이의제기

거래처는 은행거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 **거래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 9 조 준용규정

신청인과 은행은 이 약관에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정함이 없는 한 국제상업회의소의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 <무역업무 자동화 처리약관>, <전자금융거래 관련약관> 및 은행의 관련규정에 따르기로 한다.

제 10 조 약관의 변경

- (1)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예정일 직전 1 개월간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변경전의 거래에 대하여는 변경전 약관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 (2) 제 1 항의 변경내용이 거래처에게 불리한 경우 은행은 이를 전자우편 등으로 변경 전 최소 30 일전까지 개별통지 합니다. 다만 거래처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3) 은행은 제 2 항의 통지를 할 경우 “거래처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4) 거래처가 제 3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